

##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조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신탁업자명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문의가능 전화번호 : 02-2004-8963/0991

###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가. 집합투자기구 명칭: 피델리티 월지급식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나. 집합투자기구 분류: 증권[채권-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
- 다. 보관 • 관리기간: 2011.06.20 - 2012.06.19
- 라. 집합투자업자: 피델리티자산운용(주)
- 마.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하나은행, 홍콩상하이은행, 외환은행,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2.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변경일자	변경사유	주요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2011.08.25	제 14 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8 조 및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C 수익증권 3. 종류 C-e 수익증권 4. 종류 I 수익증권 5. 종류 F 수익증권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8 조 및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C 수익증권 3. 종류 C-e 수익증권 <b>4. 종류 C-w 수익증권</b> 5. 종류 I 수익증권 6. 종류 F 수익증권
2011.08.25	제 20 조 (수익증권)	①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	①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

	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2. 종류 C 수익증권 :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3. 종류 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4. 종류 I 수익증권 : 최소 50 억원에서 최대 100 억원 까지 투자하는 개인, 최소 50 억원에서 최대 500 억원 까지 투자하는 법인 5. 종류 F 수익증권 : 기관투자자, 기금, 100 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개인, 500 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법인, 집합투자기구, Wrap Account 계정, 특정금전신탁	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2. 종류 C 수익증권 :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3. 종류 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b>4. 종류 C-w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 전용</b> 5. 종류 I 수익증권 : 최소 50 억원에서 최대 100 억원 까지 투자하는 개인, 최소 50 억원에서 최대 500 억원 까지 투자하는 법인 6. 종류 F 수익증권 : <b>기관투자자, 기금, 100 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개인, 500 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법인, 집합투자기구, 특정금전신탁</b>
2011.08.25	제 23 조 (환매수수료)	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종류 A 수익증권] 1. 30 일 미만: 이익금의 10% 2. 30 일 이상: 이익금의 0%  [종류 C, C-e, I 및 F 수익증권] 1.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2. 90 일 이상: 이익금의 0%	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종류 A 수익증권] 1. 30 일 미만: 이익금의 10% 2. 30 일 이상: 이익금의 0%  [종류 C, C-e, <b>C-w</b> , I 및 F 수익증권] 1.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2. 90 일 이상: 이익금의 0%
2011.08.25	제 40 조 (투자신탁	-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

	보수)		<p>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은 신탁재산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수율이 감소할 수 있다.</p> <p>(추가)</p> <p><b>4. 종류 C-w 수익증권</b></p> <p><b>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b></p> <p><b>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00%</b></p> <p><b>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b></p> <p><b>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최고 연 0.028%</b></p>
2012.01.25	제 1 조 (목적 등)	<p>②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익자는 해외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해외 채권은 다양한 경제 변수와 시장금리에</p>	<p>②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익자는 해외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해외 채권은 다양한 경제 변수와 시장금리에 연동되어 수</p>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12.01.25	제 2 조 (투자신탁의 종류,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p>① 이 투자신탁은 <u>법 제 233 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u>으로서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p> <p>(이하생략)</p>	<p>① 이 투자신탁은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p> <p>(추가)</p> <p>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p> <p>1. 이 투자신탁은 <u>법 제 229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집합투자기구</u>이다.</p> <p>2. 이 투자신탁은 <u>중도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집합투자기구</u>이다.</p> <p>3. 이 투자신탁은 <u>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추가형 집합투자기구</u>이다.</p> <p>4.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u>법 제 231 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집합투자기구</u>이다.</p> <p>5. 이 투자신탁은 <u>법 제 233 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u>이다.</p> <p>6. 이 투자신탁은 복수의</p>

			<p><u>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법 제 232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이다.</u></p> <p>(이하 생략)</p>
2012.01.25	제 10 조 (신탁금의 납입)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권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u></p> <p>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중 추가로 설정하는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권좌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u>은 투자신탁의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u>1,000 좌당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u></p> <p>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권좌수에 최초설정시 <u>공고되는 1,000 좌당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u> 금액은 투자신탁의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p>
2012.01.25	제 26 조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p>① 제 21 조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p>	<p>① 제 21 조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p>

		<p>같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그리고,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 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그리고,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한다. <b>(삭제)</b></p>
2012.01.25		<p>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p> <p>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p> <p>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p>	<p>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p> <p>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b>다른</b>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b>다른</b>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p> <p>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p>
2012.01.25	제 48 조 (투자신탁 재산의 회계감사)	<p>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p>

		<p>음 각 호의 서류 작성과 함께 투자신탁의 외부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p> <p>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p> <p>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p> <p>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p>	<p>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p> <p>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p> <p>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p> <p>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p>
2012.01.25	제 49 조 (신탁계약의 변경)	<p>③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 및 동법 시행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영업 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p> <p>④           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 23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 3 항 및 제 5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p>	<p>③           (삭제)</p> <p>③           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 23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 4 항의</p>

		<p>하다.</p> <p>⑤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p>	<p>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p>
2012.06.01	제 20 조 (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	<p>①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p> <p>1. 종류 A 수익증권 :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p> <p>2. 종류 C 수익증권 :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p> <p>3. 종류 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p> <p>4. 종류 C-w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 전용</p> <p>5. 종류 I 수익증권 : 최소 50 억원에서 최대 100 억원 까지 투자하는 개인, 최소 50 억원에서 최대 500 억원 까지 투자하는 법인</p> <p>6. 종류 F 수익증권 : 기관투자자, 기금, 100 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개인, 500 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법인, <u>집합투자기구, 특정금전신탁</u></p>	<p>①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p> <p>1. 종류 A 수익증권 :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p> <p>2. 종류 C 수익증권 :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p> <p>3. 종류 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p> <p>4. 종류 C-w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 전용</p> <p>5. 종류 I 수익증권 : 최소 50 억원에서 최대 100 억원 까지 투자하는 개인, 최소 50 억원에서 최대 500 억원 까지 투자하는 법인</p> <p>6. 종류 F 수익증권 : 기관투자자, 기금, 100 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개인, 500 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법인, <u>(삭제), 특정금전신탁</u></p>

2012.06.01	제 20 조의 2 (판매수수료)	<p>② 선취판매수수료</p> <p>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납입금액.판매회사.납입회수.납입기간별로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을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하 기재 생략)</p>	<p>② 선취판매수수료는</p> <p>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납입금액.판매회사.납입회수.납입기간별로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b>(삭제)</b> (이하 기재 생략)</p>
2012.06.01	제 23 조 (환매수수료)	<p>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종류 A 수익증권]</p> <p>1. 30 일 미만: 이익금의 10%</p> <p>2. 30 일 이상: 이익금의 0%</p> <p>[종류 C, C-e, C-w, I, F 수익증권]</p> <p>1.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p> <p>2. 90 일 이상: 이익금의 0%</p>	<p>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1. <b>2012년 8월 31일까지</b> <b>환매청구시:</b> [종류 A 수익증권] 30 일 미만: 이익금의 10% 30 일 이상: 이익금의 0%</p> <p>[종류 C, C-e, C-w, I, F 수익증권]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90 일 이상: 이익금의 0%</p> <p>2. <b>2012년 9월 3일 이후</b> <b>부터 환매청구시:</b> <b>[종류 A, C, C-e, C-w, I 및 F 수익증권]</b> <b>환매수수료 없음</b></p>
2012.06.01	제 26 조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p>① (기재생략)</p> <p>1.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p>	<p>① (기재생략)</p> <p>1.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p>

		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기재생략) 나. 모두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다.-라. (기재생략)	해당하는 사유  가. (기재생략) 나. 모두자신탁이 <b>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 의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다.-라. (기재생략)
2012.06.01	제 27 조의 2 (투자신탁의 전환)	⑧ 수익자가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에서 이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에 따라 취득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제 3 항에 따른 전환처리일을 매수일로 본다) 환매수수료를 부과한다.	⑧ <b>2012년 8월 31일까지 환매 청구하는 경우로서</b> 수익자가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에서 이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에 따라 취득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제 3 항에 따른 전환처리일을 매수일로 본다) 환매수수료를 부과한다.
2012.06.01	제 39 조 (자산운용지시 등)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u>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u>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b>(삭제)</b>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2012.06.01	제 49 조 (신탁계약의 변경)	③ 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 23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 4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 23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b>제 4 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 및 동법 시행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b>

			는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3.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해당사항없음

###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해당사항없음

###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 해당사항없음

### 6. 회계감사인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변경전				변경일	변경후			
회계 감사인명	계약 기간	감사 보수	계약 방법		회계 감사인명	계약 기간	감사 보수	계약 방법
삼일회계법인	1년	132만원	서면계약	-	-	-	-	-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 7.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부합함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적정함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공정함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적정함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해당사항없음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

###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